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조직)

제4조(준수사항)

제5조(승인 절차 및 사고 조사 보고)

제6조(준용)

제7조(관련문서)

부칙

작성부서	학생취업처	제정일자	2017. 02. 22.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사무처장	학생취업처장	교무처장	총 장
서 명						
일 자						

개정이력		
개정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2017. 02. 22.	규정 제정
1	2018. 02. 19.	- 2018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한 전면 개정 기획홍보처 → 기획처, 입학관리센터 → 입학처 학생처/취업지원처 → 학생취업처 - 전공주임교수 → 학과장 변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집단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과 대학 내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 집단활동”이라 함은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의 동아리, 학생자치회, 학부(전공), 대학 등이 주관이 되어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O.T, M.T, 환영회, 축제, 체육대회, 행사 등)를 하는 모든 활동이다.

② “인권침해 행위”란 학생 집단활동 중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행위,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성적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행위이다.

1. 신체적 가해행위 :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뻗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등)를 가하는 행위

2.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적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성적 가해행위 : 문자·언어적 방법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③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신체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조직) ① 학생 집단활동시 사고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학생취업처장으로 한다.<2018.02.19.>

② 효율적인 사고 예방과 체계를 위하여 학생 집단활동을 주관하는 학생대표와 담당 지도교수를 현장 책임자로 한다.

③ 인권침해 발생시 인권침해 학생의 신고·상담·처리는 학교생활지원센터장이 한다.

제4조(준수사항) 현장 책임자들은 학생 집단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숙박시설(장소)에 관한 사항

1. 숙박시설(장소)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

2.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등 확인

②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1.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2. 운전자 등 차량 안전 확인

③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사항

④ 행사 전 답사

1. 참가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음주, 폭력, 인권침해 행위등) 실시

2. 필요시 교직원 동행

3.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제5조(승인 절차 및 사고 조사 보고)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 집단활동 승인신청서를 행사 1주일 전에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2018.02.19.>
② 학생관련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히 응급처치 및 119에 신고하고, 학생취업처에 유선으로 즉시 보고한다.<2018.02.19.>
③ 기타 사고 발생시 현장 지도교수는 행사를 중지하고, 학생취업처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018.02.19.>

제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확보 매뉴얼”을 준용 한다.

제7조(관련문서) 이 규정의 관련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3. 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확보 매뉴얼”
4. TWR-A101 학칙 제40조(학생지도)
5. TWP-A502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6. 동원대학교 재난 및 위기 대응 매뉴얼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생 집단활동 승인 신청서

결재	담 당	과 장	처 장	총 장
			전결	

전 공 명		학생참가인원 (_____명)	1학년	명
			2학년	명
			3학년	명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출발 및 도착	출발시간	:	도착시간	:
	출발장소		도착장소	
활동장소 (숙박지명, 세부주소)			연락처	
교 통 편 (행당사항모두체크)	□비행기 □배 □관광버스 □학교버스 □기차 □개별도착 □기타_____.			
인 솔 자 (모두기재)				
목 적				

위와 같이 학생활동(□전공M.T, □졸업여행, □체육대회, □기타_____)
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학과장 _____ (인)

학 생 대 표 _____ (인)

※ 확인사항

- 수업 유( ), 무( ) [강의시간표 첨부]
- 전공 강의시간표 첨부 및 수업 있을 시 휴·보강계획서 교무처에 별도 제출

붙임 : 1. 학생집단활동 참석자 명단
2. 전공별 강의시간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3.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해외일 경우)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
5. 소요예산 및 세부일정 각 1부. 끝.

[별지 제2호 서식]

학생 집단활동 참석자 명단

번호	전공명	학년	학 번	성 명	휴대전화	교통편 세부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교통편 세부사항에는 차량 탑승 번호, 비행기 편명 등을 기재함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

1. 교통안전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및 운전자	차량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계약차량과 동일차량 여부(차량번호)를 확인하셨습니까?	
	차량상태점검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앞 타이어 재생활용은 불법)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소화기 비치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를 확인하셨습니까?	
	운전자	운전자 적격 심사여부 및 음주여부는 확인하셨습니까?	
학생	안전교육비상대처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습니까?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소화기, 비상망치 위치를 알려주셨습니까?	
	약품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구비하셨습니까?	
		보호가 필요한 학생 상황은 파악하셨습니까?	
연락망	비상연락망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유사시 학교,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연락	

2. 숙소 점검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행사 당일 수용인원이 적정 숙박 정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까?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합니까?	
	지자체 안전점검 등을 받은 시설입니까?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도착 후	외부인이 숙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구급약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3. 화재 예방

단계	점검사항	확인
답사	2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정상 작동합니까?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숙박 및 교육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착 후	위급 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현장에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소화기 및 완강기의 위치 및 사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습니까?	